

Fair 
Player
Club


○
기미서 882년공 · 목공 목틀이이비류이이비
○

Fair 
Player
Club

준법 ·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2016년 12월 2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Fair 
Player
Club



준법 ·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2016년 12월 2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인천시와 함께하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 일시 : 2016년 12월 2일 (금) 14:00-17:00
- 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 주최 : 인천광역시·인천상공회의소·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주관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시 간		프로그램
14:00~14:05	5'	개회사 -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14:05-14:10	5'	환영사 -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부회장
14:10-14:15	5'	환영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14:15-14:20	5'	사진 촬영
14:20-15:00	40'	청탁금지법 소개 및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황인선 과장
15:00-15:20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
15:20-15:40	20'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책임연구원
15:40-16:40	60'	준법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경영 사례 발표 (각 30분)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조정실 이상용 미래전략팀장 -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
16:40-16:55	15'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 및 반부패 서약 (Fair Play) 안내 -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강주현 대표
16:55-17:00	5'	질의응답 및 폐회



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청탁금지법 소개 및 준법 윤리경영의 중요성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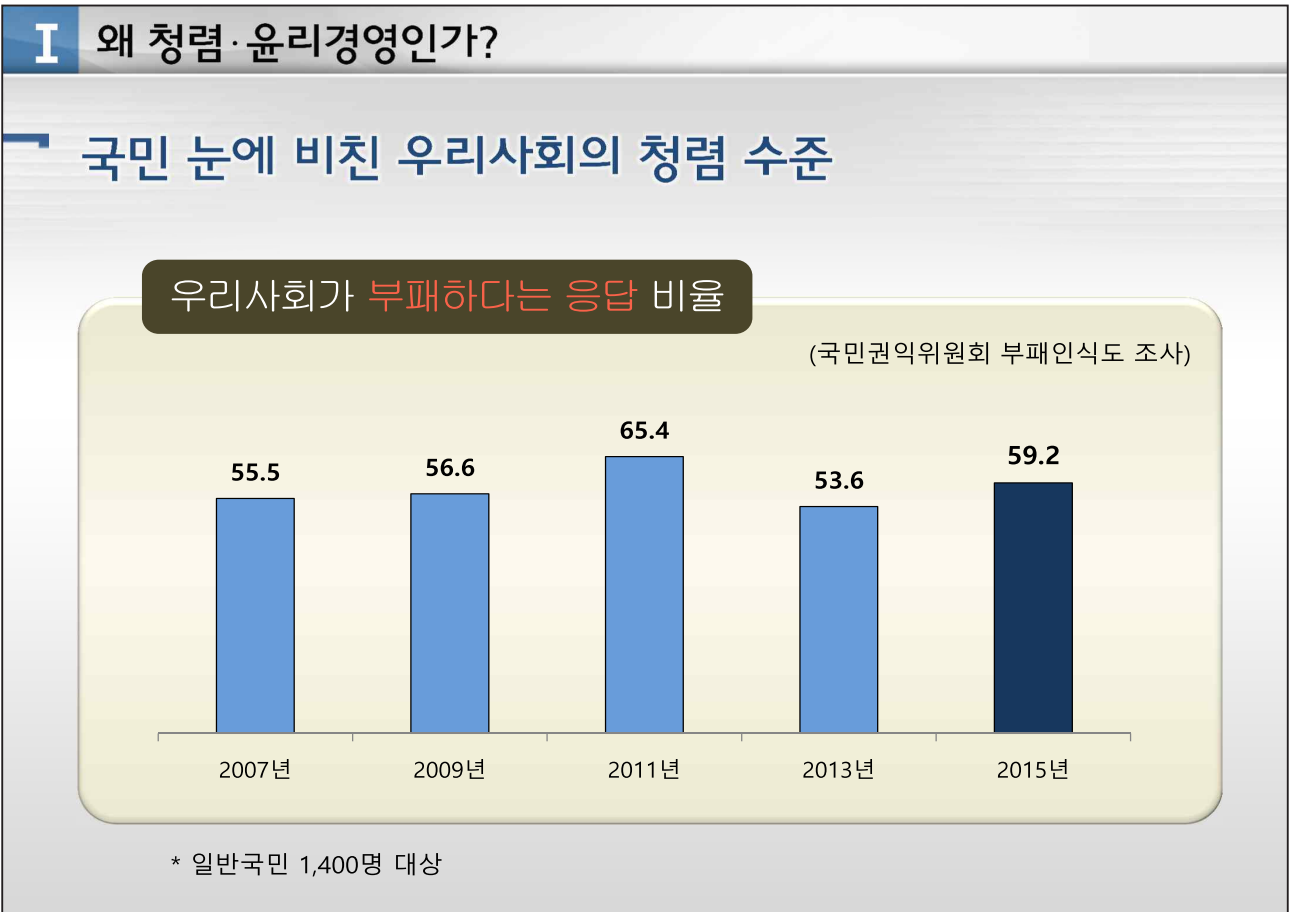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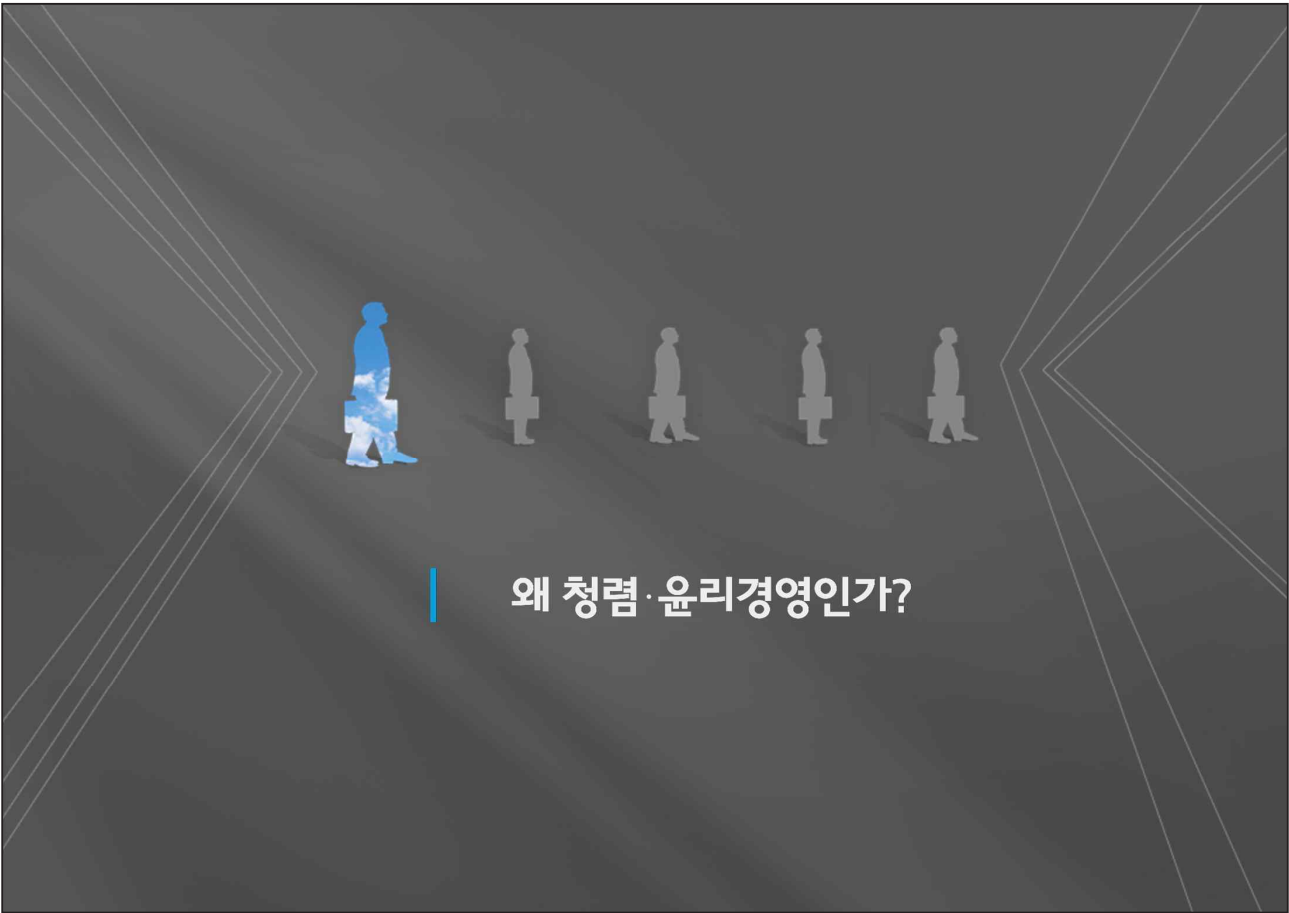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 II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
- III 청탁금지법 시행
- IV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
- V 맺음말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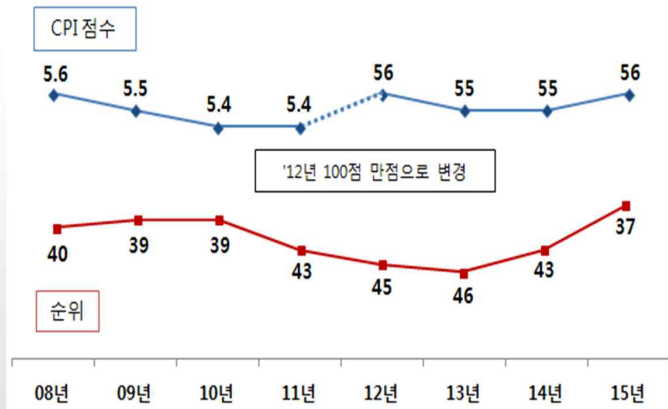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	국가명	CPI 점수
1	Denmark	91
2	Finland	90
4	New Zealand	88
8	Singapore	85
18	Japan	75
18	Hong Kong	75
23	Estonia	71
27	Bhutan	65
30	Taiwan	62
36	Spain	58
37	Korea (South)	56
37	Czech	56

우리나라 CPI 순위 및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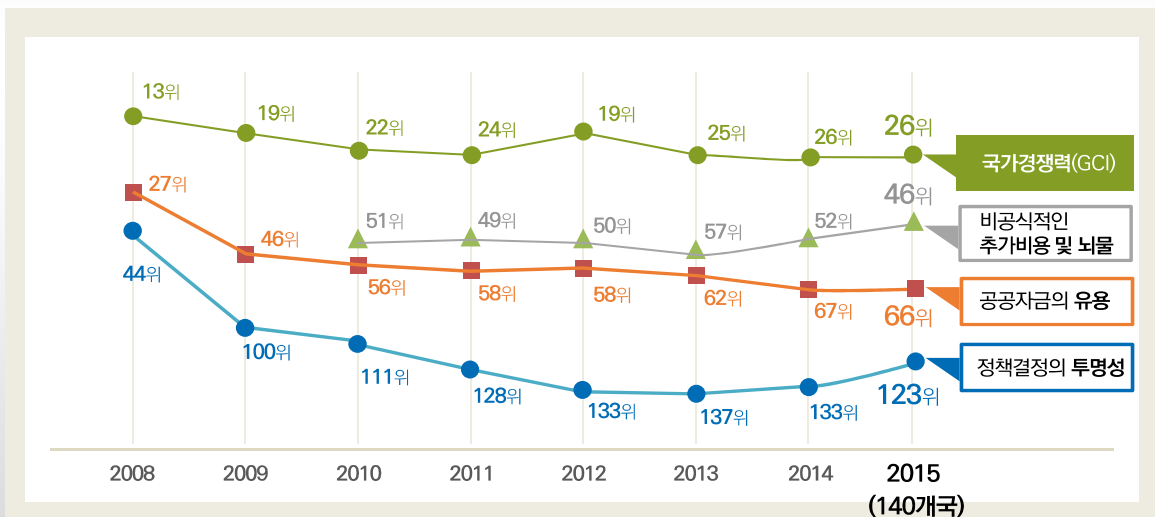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국가경쟁력과 공공 부문 청렴 수준

WEF 국가경쟁력 순위

※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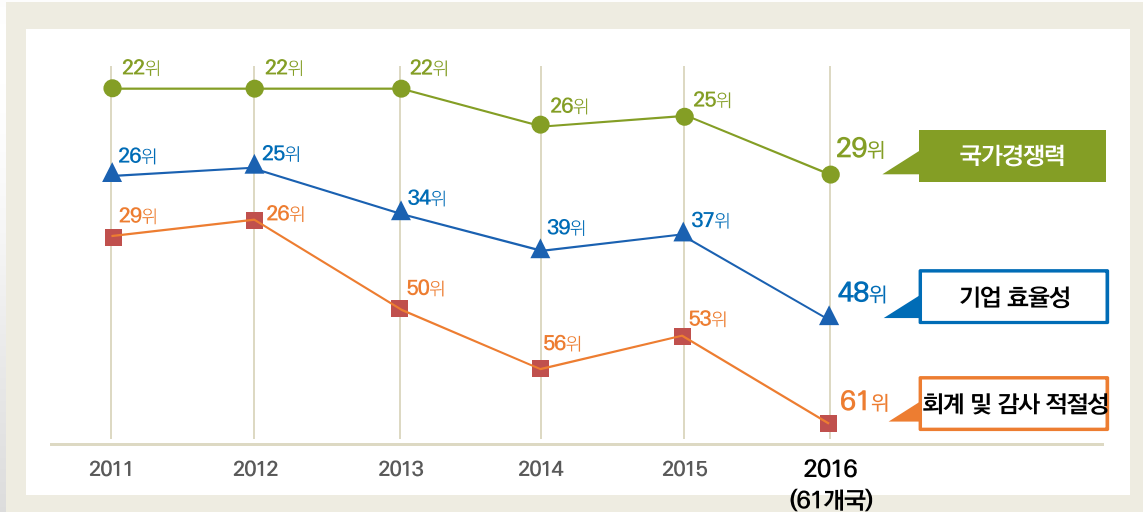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민간 부문의 청렴 수준

IMD 국가경쟁력 순위

※ 출처 : 국제경영개발원(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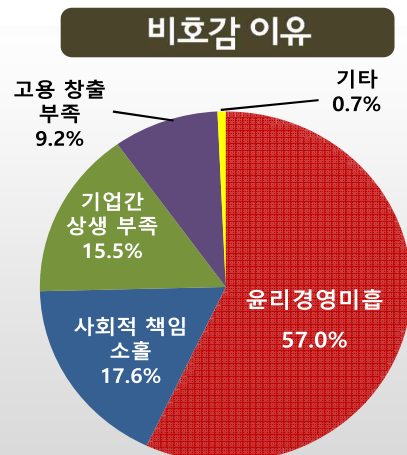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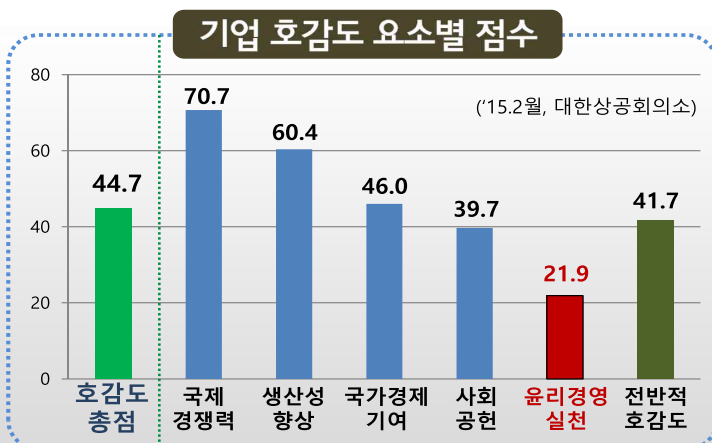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국민권익위원회
Korea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낮은 기업 호감도 : 100점 만점에 44.7점

- '윤리경영 실천' 부문은 평가요소 중 가장 낮은 21.9점
- 비호감 이유 중 '윤리경영 미흡'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외국 언론이 바라 본 한국사회

“ 원전의 안전성을 외면한
결탁문화가 심각,
공급업체와 시험기관의 유착구조는
마피아에 비견할 만하다. ”

The New York Times ('13.8)

“ 부패를 성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관대하게
대응해 왔다. ”

Financial Times ('14.6)

“ 한국에서는 법조계, 군인, 교사,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촌지나 떡값 같은 부패가 만연해있다. ”

Le Monde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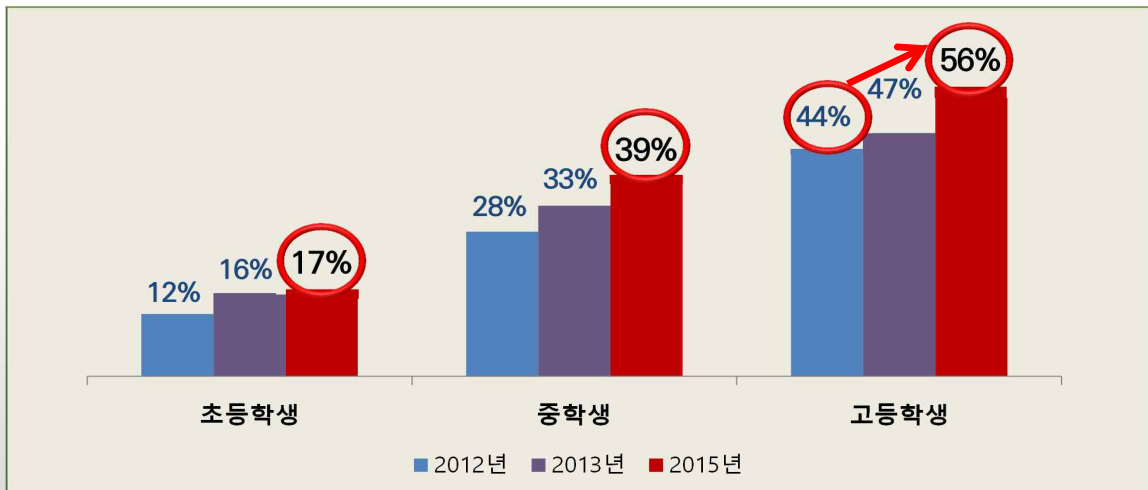


I 왜 청렴·윤리경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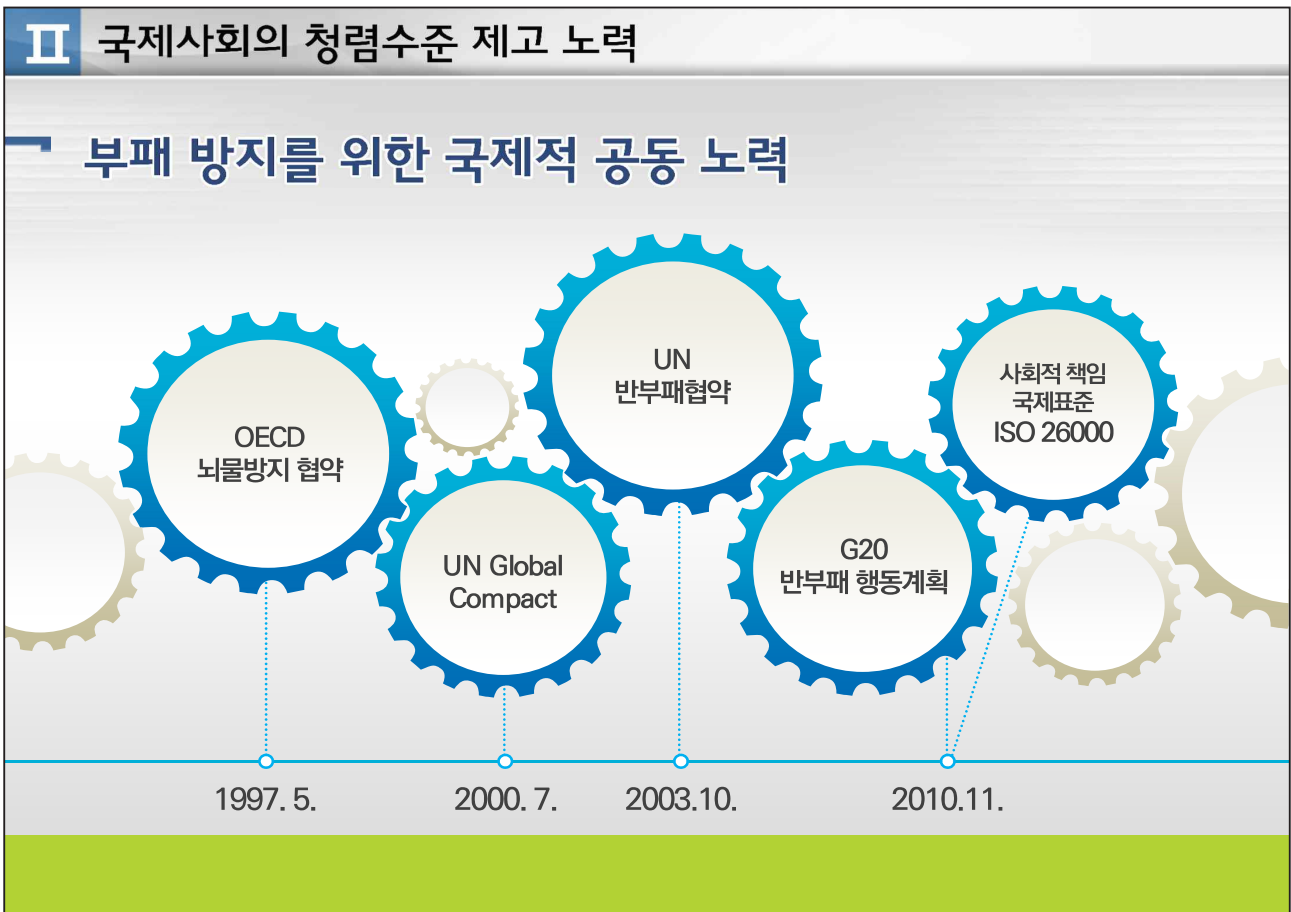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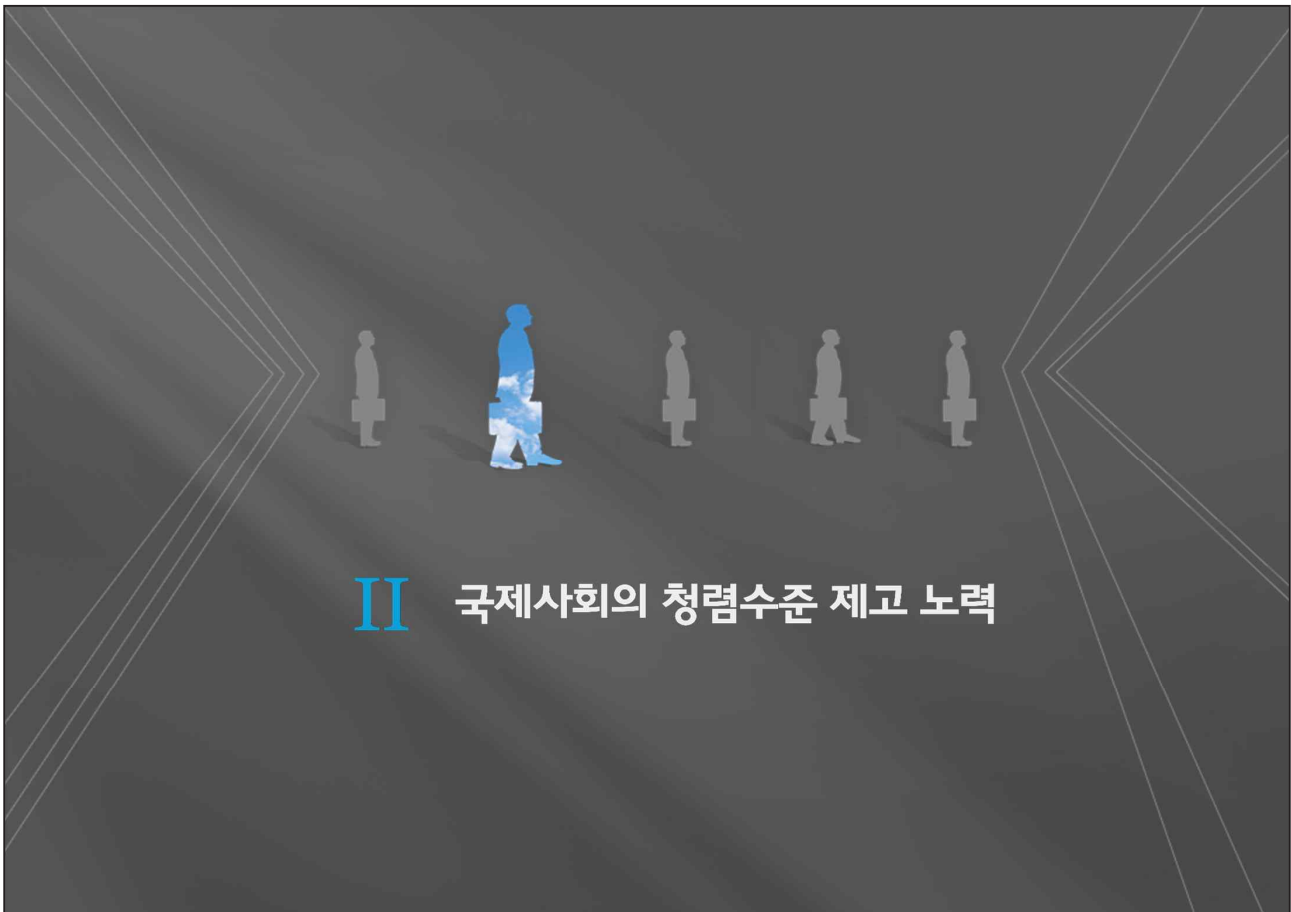


부패로 인한 가장 큰 손실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10억 원이면 교도소 1년 수감도 기꺼이...



(※ 출처 : 흥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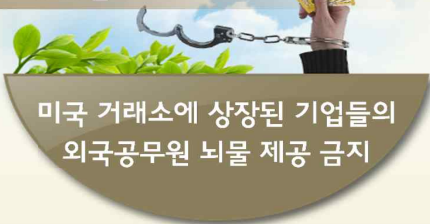
II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

주요국의 반부패 법률

부패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1977년-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외국공무원 뇌물 제공 금지



영국 반뇌물법
-2011년-



영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공무원 뇌물 제공 및
기업 간 뇌물수수 금지

II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

독일의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SIEMENS**,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美 정부에 **8억 달러** 벌금 납부('08년)



프랑스 석유화학업체 **TOTAL**,
이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美 정부에 **3억 9,820만 달러** 벌금 납부('13년)

일본의 종합상사 **MARUBENI**,
인도네시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美 정부에 **8,800만 달러** 벌금 납부('14년)

Marubeni

II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

'검은 돈'을 위한 은신처는 없다

비자금 은닉, 탈세 방조 등 **도덕성을 상실한 스위스 은행**

- 스위스 최대 은행 **UBS**

- 미국 정부에 **7억 8천만 달러**(약 8,600억원),
- 독일 정부에 **3억 유로**(약 3,678억원) 벌금 납부



- 스위스 最古 은행 **베겔린**

- 미국 정부에 **5,780만 달러**(약 640억원) 벌금 납부 후 **폐업**



비밀주의 포기, 계좌 소유자의 모국에 예금정보 제공

II 국제사회의 청렴수준 제고 노력

엄격한 리베이트 규제로 공정경쟁 유도

OLYMPUS

의료장비 판매를 위해 의사에게 고급여행 등 제공

美 법무부 **6억 4,600만 달러**(약 7,170억원) 벌금 부과('16년)

올림푸스의 前 준법감시인이자 내부고발자인 John Slowik에게는 **5,100만 달러**(약 566억원) 지급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대가로
PC 제조사들에 리베이트 지급

EU 집행위 **10억 6,000만 달러**(약 1조 4,500억원)
벌금 부과('09년)





III 청탁금지법 시행

● 청탁금지법에 대한 생각들

기 대	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 근절의 전환점 ✓ 기득계층의 암묵적 결탁 단절 ✓ 공직자 보호의 마술 방패 ✓ 공정한 경쟁 문화 정착 ✓ 사회 전반 거품 제거 계기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 저녁 있는 풍경, 주말 있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인간관계 단절 ✓ 냉정과 몰인정의 탈관계사회 ✓ 내수 위축, 경제 악화 ✓ 국가의 일상생활 과도 개입 ✓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갈라파고스화와 복지부동 ✓ 실효성 취약, 사문화 우려

Ⅲ 청탁금지법 시행

● 청탁금지법의 핵심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Ⅲ 청탁금지법 시행

●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적용 대상자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III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 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III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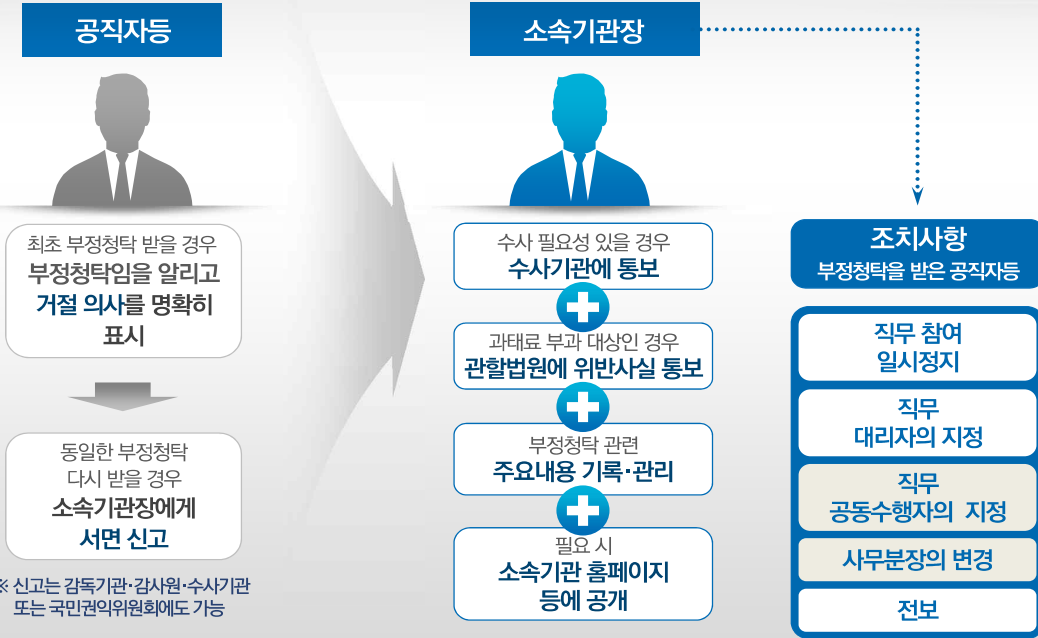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III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III 청탁금지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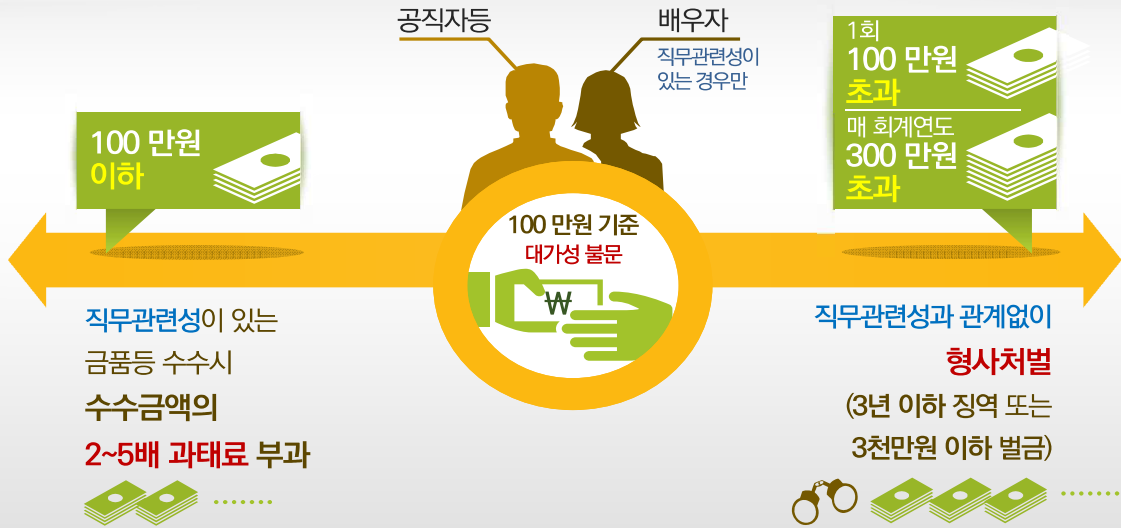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III 청탁금지법 시행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III 청탁금지법 시행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허용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정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III 청탁금지법 시행

시행령 주요 내용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시행령 제17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예외적 허용

음식물

3만원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5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

10만원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III 청탁금지법 시행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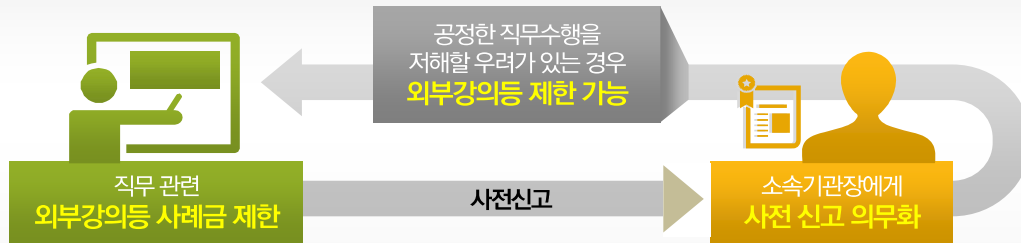
전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III 청탁금지법 시행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II 청탁금지법 시행

금품등 수수 금지

FAQ

Q. 학부모들 5만원 선물 가능 ?
☞ 2,000원씩 30명 6만원 선물, 2만원 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

Q. 혼주가 하객으로 참석한 직무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하객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

Q. 무조건 1/N ?

Q. 배우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 받는다면 ?

Q. 선물 + 식사, 1차 + 2차, 1차는 내가 2차는 상대방

Q.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경우 도착한 선물 ?

Q. 음식물 초과분 등 초과금품 처리

Q. 국장이 인사과장에게 20만원 선물

Q. 여러명으로 계산, 쪼개기, 선납

Q. 초등학교 친구, 입사동기, 동호회, 이웃인 업무관련자

Q. 백화점 VIP 고객 할인혜택, 특정인 할인, 20만원 와인 3만원 결제 ?

Q. 직원 3명이 5만원씩 각출하여 다른 부서로 발령난 과장에게 선물

Q. 직접 만들거나 재배한 난, 꽃, 고추장 등(실거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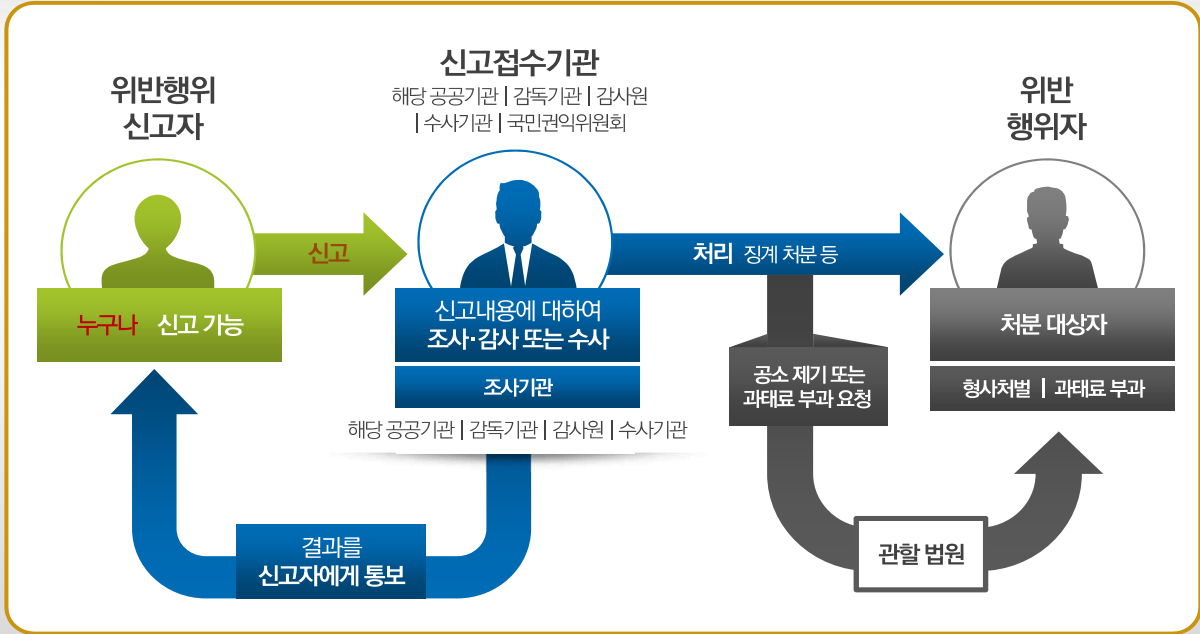
Q. 업무추진비는 3만원만 가능 ?

Q.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택배비 포함 여부

Q. 공식적인 행사에서 10만원 식사 ?

III 청탁금지법 시행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III 청탁금지법 시행

신고자 보호와 보상





IV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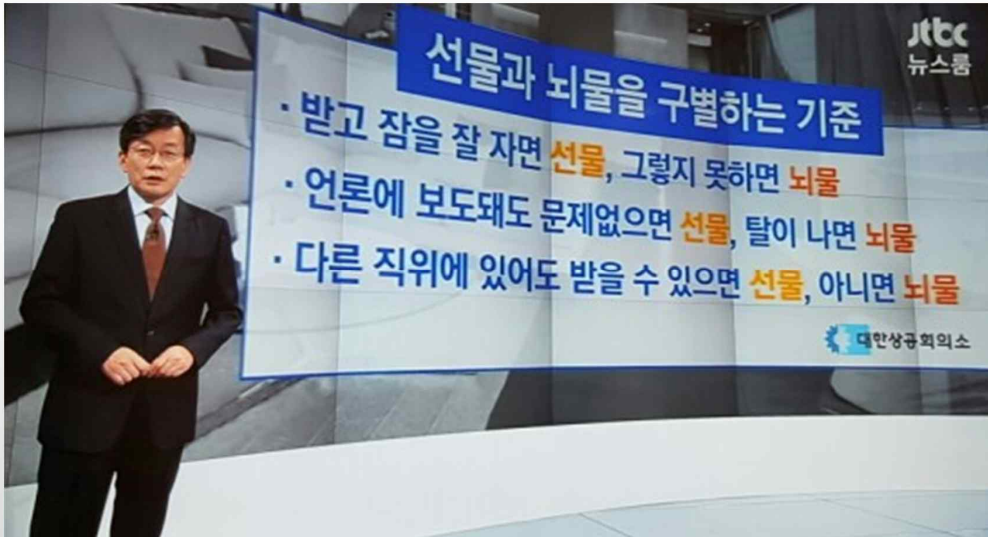
●●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

盤外八目

當局者迷 傍觀者明

익숙한 것 ≠ 바람직한 것
 이익이 되는 것 해야하는 것

양심과 상식은 답을 알고 있다.



* 출처 : JTBC

적절한 외부감독과 내부통제 필요

“Corruption is the result
of bad governance”



“세상 사람들의 1%는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반면,
또 다른 1%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 남의 물건을 훔친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



IV 청렴 대한민국을 위한 동행

은밀한 부패 ·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부패 ·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내부신고는 가장 효과적인 적발 수단

- '08년 이후 부패신고 이첩사건의 56.2%가 내부신고

* 총 1,136건 중 638건, 내부신고를 통해 1,399명 기소, 부패 적발액은 5,365억원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내부신고

* 대한적십자사 오염혈액 유통 제보('03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05년, 영화 '도가니'), 해군 군납비리('07년), ○○고교 급식비리('15년)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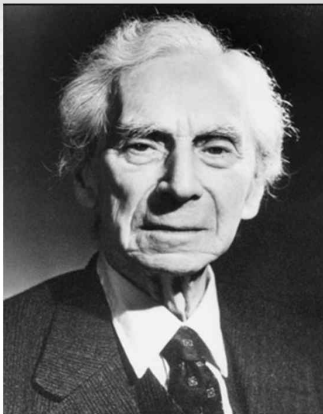
변화와 혁신의 임계점을 넘어 청렴한 사회로



로저 배니스터 (Roger Bann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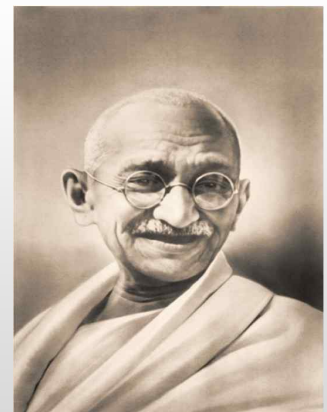
1마일 4분 벽 처음으로 돌파

한 달 후 1명, 1년 후 27명, 2년 뒤엔 300명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해냈다는 사실이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V 맺음말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및 반부패 국제동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Network Korea

CSR 및 반부패 국제 동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임홍재
2016. 12. 2 (금)

TABLE OF CONTENTS

- 01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02 | 유엔 글로벌콤팩트(JN Global Compact)
- 03 | 반부패 국제 동향
 -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 (FCPA)
 - OECD 뇌물방지협약
 - 유엔반부패협약(UNCAC)
 - 영국 뇌물수수법 (Bribery Act 2010)
- 04 | 맺음: 충분한 사전주의 의무(due diligence)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HANGES & CHALLENGES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에의 도전

- ◆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
- ◆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기업 정보에 접근이 용이
- ◆ 가치와 도덕의 중요성
- ◆ 공공 재화와 민간 재화 간 경계 모호
- ◆ 국제 경제의 불안 증폭

DEFINITION & SPREAD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 기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투자자, 근로자,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 등)에게 지속가능한 가치(sustainable value)를 창출하는 것 / 자선, 재능기부, 박애를 넘어선 접근 /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주시/

Be just before you are generous. / The end should not justify the means.

- 금전적 기여를 하더라도,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가치를 기업의 경영전략, 정책, 관행, 운영에 내재화하지 않으면 이 금전적 기여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2. CSR의 확산 배경

1)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 ◆ 이해관계자의 요구
- ◆ 기업 평판 관리의 중요성
-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 ◆ 가치 주도 시대
- ◆ 인터넷 / 소셜미디어의 발달
- ◆ 고령화 사회

2) 이해관계자의 요구

- ◆ 투자자
- ◆ 협력사
- ◆ 소비자
- ◆ 정부
- ◆ 직원

CSR & PROFIT

A. 브랜드 이미지 제고·경쟁력·마케팅·운영효율성 제고

B. 안정적 경영 강화

C. 주주의 신용도 제고

D. 소비자 항의 위험도 감소

E. 이해당사자(정부, 사업파트너, 노동조합, 공급업체 등)과
관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사업관계 유지

02

유엔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 유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
- 목표: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비즈니스 전략과 활동에 통합
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등 유엔 목표 달성에 이바지
- 회원기업은 매년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 상황을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 배경
 - ⇒ 환경, 사회 이슈에 있어서 기업의 영향력 확대
 - ⇒ 유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
 - ⇒ 유엔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기구 발족 필요성

UN GLOBAL CO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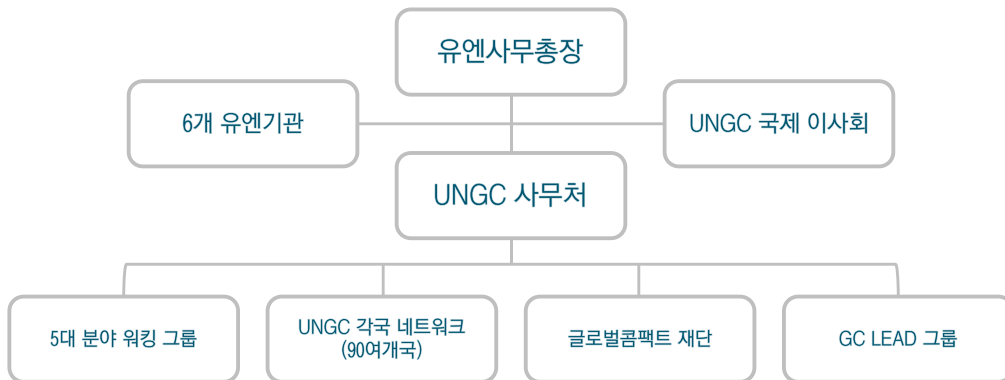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 1999.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WEF) 에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Global Compact 제창
- 2000.7 뉴욕 UN본부에서 Global Compact 발족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 단체 참석)
- 2007.1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주요 아젠다로 주관 추진
- 유엔과 기업의 신 파트너십은 21세기의 핵심 역량이 될 전망;
2011.8.10 반기문 사무총장은 향후 임기 5년 중 유엔이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언급
- 2015.6 Global Compact 설립 15주년 회의(GC+15: Business as a force for good) 개최
- 2016.6 UNGC Leaders Summit에서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 런칭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와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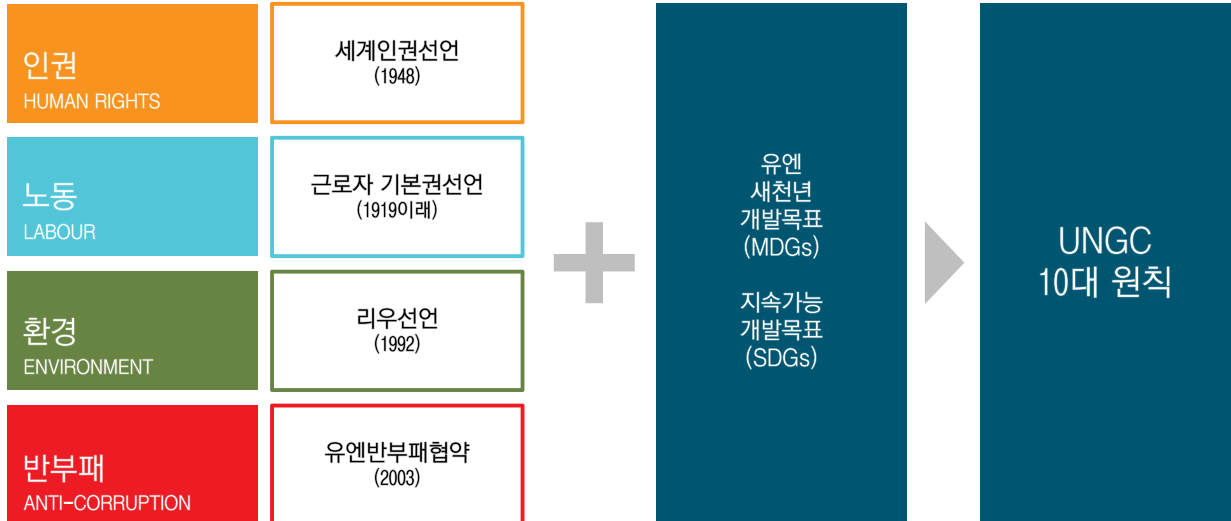
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 조직도



UNGC 10 PRINCIPLES

기존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4대 부문 10대 원칙 설정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인권〉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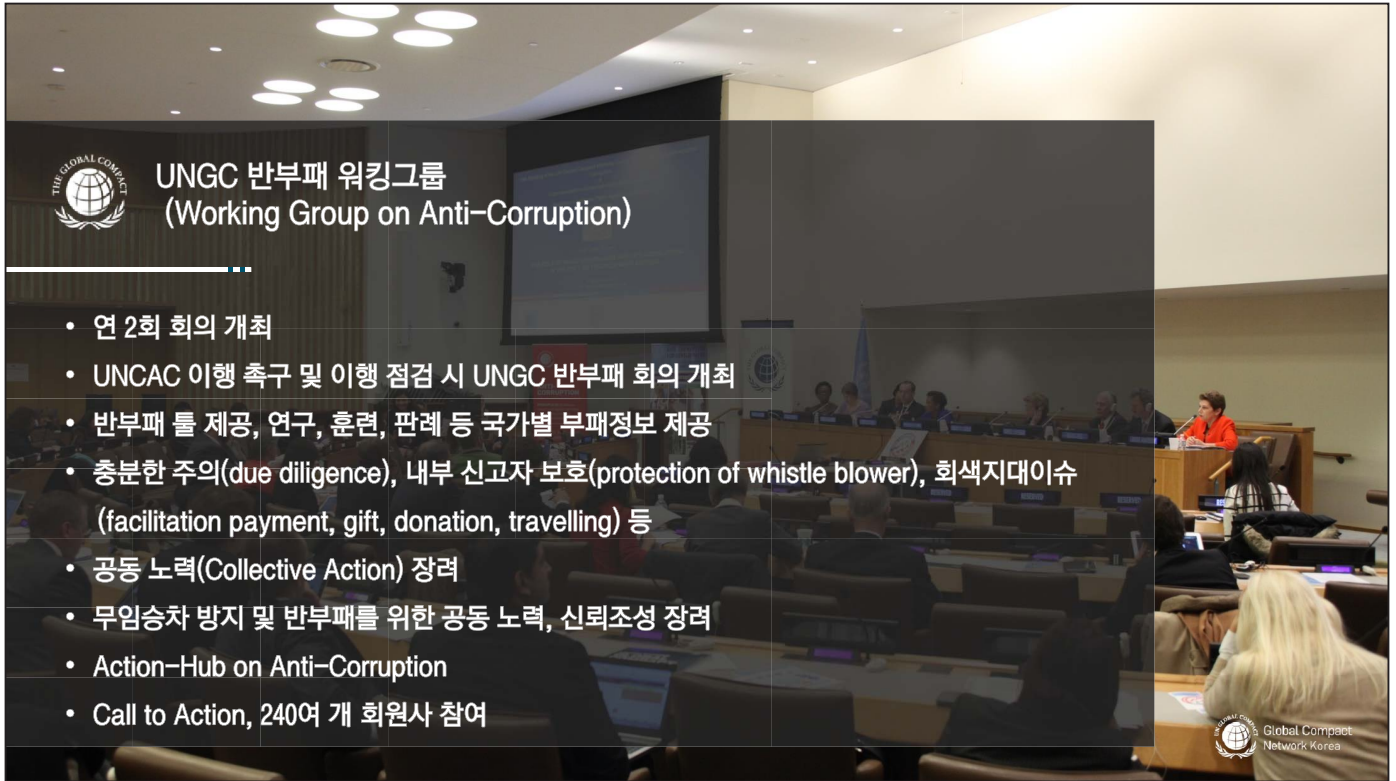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 사람과 지구를 중심에 두고
- ✓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권장
- ✓ 원칙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
- ✓ 기업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








UNGC 반부패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Anti-Corruption)

- 연 2회 회의 개최
- UNCAC 이행 촉구 및 이행 점검 시 UNGC 반부패 회의 개최
- 반부패 틀 제공, 연구, 훈련, 판례 등 국가별 부패정보 제공
-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내부 신고자 보호(protection of whistle blower), 회색지대이슈 (facilitation payment, gift, donation, travelling) 등
-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 장려
- 무임승차 방지 및 반부패를 위한 공동 노력, 신뢰조성 장려
- Action-Hub on Anti-Corruption
- Call to Action, 240여 개 회원사 참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반부패 노력

- 2008년 이래 매년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 2011.11. Global CSR Conference, UNGC Award 시상
- 2013.5.29 반부패 심포지엄(영국 반부패법 국내 소개)
- 2013.11.12-13 제2차 GCC 회의(준법, 감사 투명성 문제 집중 논의)
- 2014.4.18 반부패 우수사례기업 방문(지멘스 코리아)
- 2014.5.29 제주포럼 “반부패” 세션 개최
- 2014.7.3-4 2014 Youth CSR Conference 청소년 교육 확대
- 2015.5.19 UNGC Korea Leasers Summit (2015) “반부패 세션” 개최
- 2015.5.19 WB/Siemens Integrity Project “Fair Player Club” 발족 및 시행 개시



03

반부패 국제 동향



반부패 국제 동향

기업 반부패 관련 제도 강화 추세

- 2010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든 탄광, 석유, 가스 기업들은 자원 접근을 위해 국가들에게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
- 최근 3년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기소건수가 과거 전체 건수의 세 배 이상
- 2007년 전에는 뇌물 제공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 벌금이 수십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1조원을 넘어섬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움직임

- 미국의 담합 적발 사례 중 90% 이상이 내부자 신고로 이루어짐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정부 법률이 증가세 (47개 법률 중 12개가 최근 10년 사이에 제정)
-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오염된 아기 연고의 문제점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8,000억원의 벌금. 내부고발자는 1,000억원 포상금을 지급받음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이후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
-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 등 뇌물 제공 규제

OECD 반부패 협약
(OECD Anti-Bribery Convention, 1997)
- 국제상거래시 뇌물 제공을 범죄로 규정

유엔 반부패 협약
(UN Convention on Anti-corruption, 2003)
- 부패 재산 몰수 등

APEC 정상회의 반부패 선언 (2005)
- 불법 취득 자산 도피처 제공 거부

세계은행/지역은행
- 부패회사 블랙 리스트 유지 (2010이래)

영국정부, 뇌물법 제정
(The UK Bribery Act, 2010)
- 적극적, 소극적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 및 민간 기업 뇌물수수

G-7 자금세탁대책반(FATF, 1989)
- 불법자금모니터링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창설(1993)
- 각국의 부패지수를 매년 발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설 (2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도, 10대원칙

WEF PACI (Partnership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출범 (2004)
- 건설, 에너지, 금속 및 채굴산업 분야 공정 경쟁여건 목표

ISO 26000 도입 (2010),
- 사회 모든 조직의 투명성강조

G20 정상회의 반부패 (2010,서울)
- 10대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반부패 국제 동향 _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 명칭:
 - ✓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1977년 제정)
 - ✓ 기업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
- 적용 대상
 - 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기업
 - 나. 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다. 그 외 개인이 외국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최근 동향
 - ✓ 2008년 이후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
 - ✓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수사영역이 확대
 - ✓ 의료기기, 석유, 가스 등 부패구조가 드러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 수사





반부패 국제 동향 _ OECD 뇌물방지 협약

- 명칭: OECD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
 -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 1997년 채택, 1999년 발효 (한국 1999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제정)
 - ✓ 부속서(Commentaries)를 통해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지침 제시
- 특징
 - 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기로 한 최초의 합의
 - 나. 뇌물제공자만 처벌
 - 다. 외국 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임명직, 선출직을 포함
외국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
- 동료 심사 (Peer Review) 통해 각국 이행 점검



주요 내용

- 가.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협약 제1조 제1항)
 - ① 국제상거래에서 ②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③ '고의적으로' 외국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④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 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나. 외국공무원은 입법 · 사법 · 행정직 공무원 · 공공기관 ·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 +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협약 제1조 제4항 가호)
- 다. 처벌 수준: 효과적, 비례적,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협약 제3조 제1항)
(기능적 일치 Functional Equivalence)
- 라. 자국 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 +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 (협약 제2조 및 제3조 제2항) +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협약 제2조)
- 마.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
- 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 (협약 제10조)
- 사.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 자금세탁법 적용(협약 제7조)
- 아. 뇌물공여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장부를 작성 하거나 불법 · 미확인된 상거래 혹은 허위지출을 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





주요 내용

자. 주요내용 및 특징

- '뇌물수수', '외국 공무원' 포괄적으로 정의
- 형벌(penalty) '효과적(effective), 비례적(proportionate), 억제적(dissuasive)'
- 뇌물 및 뇌물수수 행위로 얻는 이익은 압류 및 몰수의 대상
- 수형기간 등에서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제공 시 부과되는 형벌과 상응하는 수준
- 정부 외 회계 및 뇌물수수 은닉을 위한 회계 및 감사 기준 준치 요구
- 추방 등 범죄 수사 등에서 사법 공조

차. OECD 뇌물수수 실무그룹이 협정의 이행 및 감시

- 1단계: 국내 이행법의 적절성
- 2단계: 국내법 강제이행을 위한 기구의 존치
- 3단계: 이행의 진전 및 해결 개선

• 2012 TI 발표

- ✓ 7개국 적극이행(세계수출의 28%), 12개국 보통이행(세계수출의 25%)
- ✓ 미국 275건, 독일 176건, 스위스 52건, 이태리 32건, 영국 23건 등

카. 도전

- 뇌물수수의 공급측면만 취급
 - ✓ 뇌물요구(Solicitation), 금품 강요(Extortion)에 취약
 - ✓ 요구 및 강요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HLRM(High-Level Reporting Mechanism) 토의 중
- 정당, 정당요원, 공직후보자, 외국 자회사(subsidiary)에 대한 규정 미흡
- 민간부문 내에서의 부패(private to private) 규정 부재
-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에 대한 규정 부재
 - ✓ 2009년 OECD 이사회는 급행료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권고
- OECD 협약과 여타 반부패 협약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간 협력 강화 필요
 -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주요 무역국의 가입 필요



반부패 국제 동향 _ 유엔반부패 협약(UNCAC)

가. 유엔이 2000년 논의 시작된 반부패 라운드결과, 2003년 유엔총회서 채택, 2005년 발효

167개국 비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참여)

나. 한국은 2008년 비준, 2008년 협약 이행

- ✓ 법률채택,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다. 유엔협약 구성

- ✓ 총 28개 조항, 각국은 민간부문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
- ✓ 비밀장부, 허위지출, 허위 문서 등 금지
- ✓ 민사, 행정, 형사상 처벌부과, 기업뇌물 범죄화 입법 조치 요구
- ✓ 국제협력으로 범죄인인도, 이송, 범죄수익 몰수, 부패 자산 반환 등 공조 제공

라. 협약관리: 당사국총회(유엔 마약기구 UNODC)

마. 국가별 이행상황 매2-3년 정기심사





반부패 국제 동향 _유엔반부패 협약(UNCAC)

바. 주요내용 및 특징

- 국내외 부패, 금품강요, 뇌물수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강제이행
- 공공부문, 민간부문 내 부패, 착복, 밀거래에 의한 부의 축적, 직권 남용, 영향력 거래
- 사법공조, 추방, 공동조사, 해외은행 재산 회수 등 국제협력
- 일부 규정은 강제적, 일부 규정은 일반적 성격
- 경제의 범세계화, 부패의 대규모화 및 확산으로 유엔협약의 효과적 이행 필요
- 국제 비즈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
 - ✓ 외국 공무원 및 공익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의 형사처벌 및 법 강제이행 (16조)
 - ✓ 뇌물수수(적극적 부패) 및 금품요구(소극적 부패) 모두 형사처벌
 - ✓ OECD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만을 처벌 / 외국공무원의 금품요구는 처벌하지 않음



반부패 국제 동향 _유엔반부패 협약(UNC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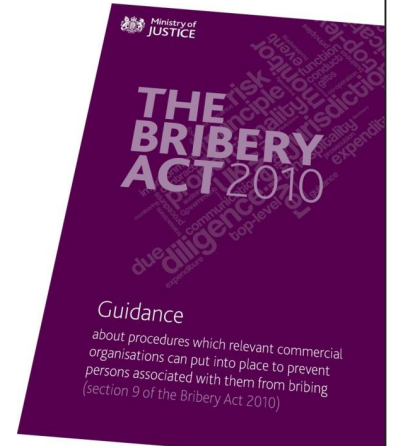
- OECD 협약 보완
 - ✓ 영향력 거래, 직권남용, 밀거래에 의한 부의 축적 (20조, 21조)
 - ✓ 법인의 책임(liability of legal persons)규정은 의무조항
 - ✓ 뇌물범죄의 처벌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 ✓ 신고인 보호(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는 자율 규정
 - ✓ 뇌물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compensation for damages) 허용
 - ✓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감소해주거나 면책 부여
 - ✓ 재산회수(asset recovery)규정은 부패공무원이 외국에 은닉한 재산을 회수 규정
- 예방 조치
 - ✓ OECD 협약에 없는 규정
 - ✓ 반부패 정책에 포함될 내용 (법의 지배, 청렴, 투명성, 책임성)
 - ✓ 반부패 기관 (정책 이행, 독립적 지위)
 - ✓ 공무원 행동 지침 (청렴, 정직, 책임, 법 위반 신고, 외부활동, 투자, 재산, 선물 등 공개)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 뇌물공여죄(제1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
 - 관련된 직무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타인을 유도
 -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에 대해 보상
- 뇌물수수죄(제2조)
 -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동의하거나, 제공받음
 -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제6조)
 - 사업 또는 사업활동 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타인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여 외국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제7조)
 - 영리단체 또는 그 영리단체와 관계 있는 자가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또는 영리단체를 위한 사업의 수행에서 이익의 획득 또는 유지
- ✓ 뇌물제공예방절차 시행 입증 시엔 항변을 통해 면책 가능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처벌(제11조)

- 제1조, 2조, 6조 위반 시
 - ✓ 약식판결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법정최고액 내 벌금형 또는 병과
 - ✓ 기소판결의 경우 최대 10년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
- 제7조 위반 시
 - ✓ 기소판결에서 벌금형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제 12조): 다음의 경우 소송절차는 영국에서 진행

- 제1조, 제2조, 제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영국 내에서 발생 시
- 위 행위가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행위자가 영국 내에서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
- 행위자가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제12조 4항(국민, 시민, 국적자, 영국 보호민, 영국거주자, 영국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등)
- 제7조의 경우,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가 영국 내 또는 영국 외 어디에서 발생했든지 7조 범죄가 성립하며, 소송절차는 영국 내에서 진행





반부패 국제 동향 _영국 뇌물법 (Bribery Act 2010)

- 일반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
- 위험도에 기초한 접근
- 법원의 판결권 강화(뇌물수수 징역형 7년에서 10년으로)
- 위반행위 확대(뇌물 수수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기업에 법적 책임 부과 등),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든 뇌물제공행위 규제 대상
- 기업에게 방어권 부여
- 접대, 홍보, 기타 사업비용
 - 적절한 수준의 접대, 홍보, 기타 유사한 형태의 사업비용 금하지 않음
 - 뇌물로 인정하려면, 접대, 홍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 확인 필요
 - 호화로운 접대, 고비용 접대는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 추론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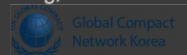


CORRUPTION

Your NO counts

SIX PRINCIPLES

- 제 1 원칙: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proportionate principles)
- 제 2 원칙: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 제 3 원칙: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 제 4 원칙: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 제 5 원칙: 의사소통(훈련 포함)(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 제 6 원칙: 감시와 점검(monitors and review)



SIX PRINCIPLES

제 1 원칙: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proportionate principles)

각 기업은 해당 규모와 사항에 맞는 절차를 채택 준수

제 2 원칙: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고위 간부급에서부터 부패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장려금지

제 3 원칙: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위험평가지행을 통해 절차와 위험도에 대해 파악

제 4 원칙: 충분한 주의(due diligence)

직원과 관련기관에 대해 충분한 사전 주의 노력

제 5 원칙: 의사소통(훈련 포함)(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반부패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 및 교육 실시

제 6 원칙: 감시와 점검(monitoring and review)

반부패관련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 및 검토 실시



영국의 2010년 뇌물법 (Bribery Ac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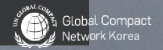
ELEVEN CASE STUDIES

- 사례 1: 제1원칙 급행료 (Facilitation payments)
- 사례 2: 제1원칙 비례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 사례 3: 제1원칙 및 6원칙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 사례 4: 제1원칙 및 제5원칙 접대 및 홍보비 (Hospitality and Promotional expenditure)
- 사례 5: 제3원칙 위험도 평가 (Assessing risks)
- 사례 6: 제4원칙 대행사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 (Due diligence of agents)
- 사례 7: 제5원칙 의사소통 및 훈련 (Communicating and training)
- 사례 8: 제1,4 및 6원칙 지역사회 보조 및 자선기부 (Community benefit and charitable donations)
- 사례 9: 제4원칙 대행사에 대한 충분한 주의 의무 (Due diligence of agents)
- 사례 10: 제2원칙 고위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 level commitment)
- 사례 11: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Proportionate procedures)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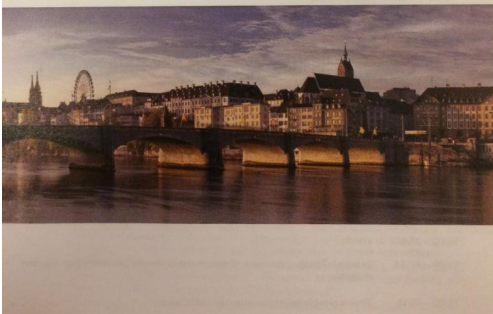
- Without combating corruption, the fight against all sustainability challenges will fail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2: "Corruption is an impedi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SDGs"
- **Negligence is Risk, Due Diligence is Rescue(가레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
 - 소홀(Negligence): 기업설립과 발전에 100년, 명성 추락에는 1일, 명성 추락의 주 요인은 부패 / 비리
 - 예방과 경계의 중요성 대두
 - 충분한 사전 주의 의무(Due Diligence), 건전한 지배구조의 핵심 / 입증 시 방어권 부여 및 면책
 - 반부패를 최우선순위로 기업의 전략, 정책, 운영에 내재화 및 내부통제 강화
 - CEO, 이사회 등 임원진의 반부패 의지 및 반복적 소통 / 준법윤리 담당자의 직보체계 운영
 - 내부고발자 보호, 급행료·선물·기증·여행경비 등 회색지대 이슈 관리감독
 - 반부패 부서에 우수 직원 배치 / 반복적 훈련
 - 공동노력에 참여 : 경쟁자 및 여타 시장 참여자와 공동 노력 전개, The rotten apple injures its neighbors. 상호 학습 및 상호 견제
 - 국제 동향 파악 : OECD 뇌물방지협약, 유엔반부패협약(UNCAC), 영국 뇌물법(Bribery Act 2010), UNGC 워킹그룹



International Centre for Collective Ac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COLLECTIVE ACTION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idence, Experience and Impact
Basel, Switzerland: 20-21 October 2016



Collective Action Conference: Evidence, Experience and Impact
(Basel, Switzerland: 20-21 Oct. 2016)

- Law Enforcement and the Private Sector on Constructive Engagement to Counter Corruption
- Financial Markets, Corruption and Collective Action
- Impact Stories
- Evidence of Effectiveness, Results and Advocacy
- Case Studies Specific to National Contexts in Asia and Opportunities for Lessons Learned
- The Role of Trust in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in Conflict Zones
- Tackling Bribery from the Demand Side





Network Korea

THANK YOU



www.fairplayerclub.kr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책임연구원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 · 윤리경영 지침서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Guideline for Busines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팀장 | 책임연구원

2016. 12. 2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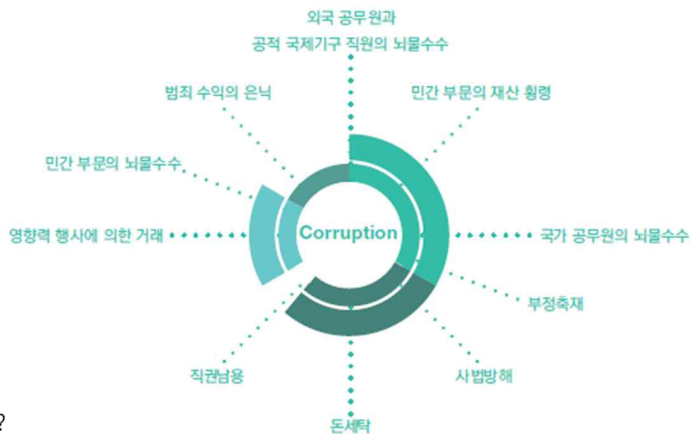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01 | 서론
 - 부패의 정의 / 유형 / 리스크와 기회
- 02 | 국제 반부패 흐름 및 주요 자료
- 03 |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 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 2) 특정 부패 이슈
 - 3) 행동강령 제정
 - 4) 반부패 이행: 예방, 발견, 대응
 - 5) 제3자 실사
 - 6) 모니터링

부패의 정의 및 유형

- 부패는 하나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부정행위를 포괄
- 부패(Corruption) 관련 국제기구의 정의

- 유엔반부패협약 (UNCAC)
국내 및 외국공무원,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공무원의 영향력에 의한 거래, 직권남용, 부정축재,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및 횡령, 범죄수익의 세탁 및 은닉, 사법방해를 포함한 범죄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
- 세계은행 (World Bank)
부패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
- 국제투명성기구 (TI)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질문 두 가지
 - 1) 모든 관계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말하고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는가?
 - 2) 내일 언론에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어도 괜찮은가?

부패 리스크 및 반부패 기회

Risks

- 윤리적 리스크**
 - 본질적으로 잘못된 행위로서의 부패
 -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청렴성 악화, 조직의 도덕성 감소
- 법적 리스크**
 - 반부패법 신설 및 강화 추세: 민·형사상 처벌 가능
 - 각국의 부패 척결 의지 증대 및 법적 처벌 확산
 - 부패가 주요 정치 이슈로 대두
 -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OECD, UNODC, World Bank)
- 경제적 리스크**
 - 부패로 인한 기업 경영 및 조달 비용 증가
 - 경영 성과 감소,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저해 및 질적 하락
 - 상당한 규모의 벌금 부과 및 계약 해지, 거래 금지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소비자 및 투자자의 구매 및 투자 감소
- 평판 리스크**
 - 부패로 인한 기업 평판 손실, 브랜드 평판 관리의 필요 증대
 - 법 준수에 관한 소극적 태도, 높은 윤리규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활동과 정책을 펼치는 기업은 높은 평판 리스크에 노출

Opportunities

- 뇌물 요구 감소**
 - “청렴한 이미지” 구축으로 지속적인 뇌물 요구 감소, 지대추구행위 방지
 - 정직한 비즈니스 기준 확립, 거래 간 확실성 제공
 - 기업의 부패 무관용 정책 강화
 - 높은 윤리규범 기준으로 기업 명성 확보
- 신뢰 형성**
 - 부패방지 법규의 효과적인 준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근로자, 투자자, 정부, 고객 등) 사이에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
 - 청렴하고 정직한 기업 활동에 대한 고객 및 근로자 인식 확대
- 지속가능한 경영**
 - 반부패 규범 기준 및 행동 도입으로 정직한 비즈니스 기준 확립
 -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
 - 기업 거래의 확실성, 기업 지속가능성 증대
 - 기업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발전에 대한 관심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와 반부패·투명성 증진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중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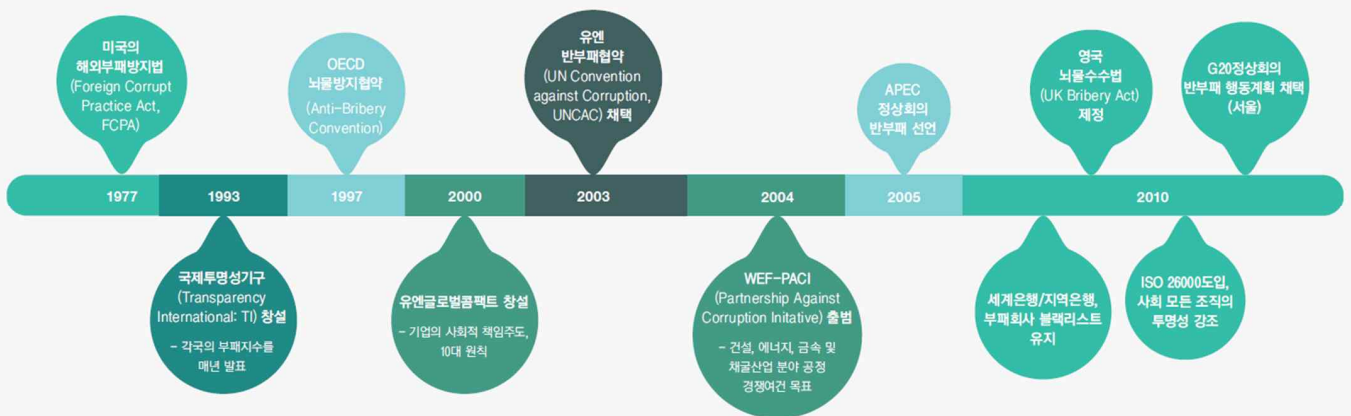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 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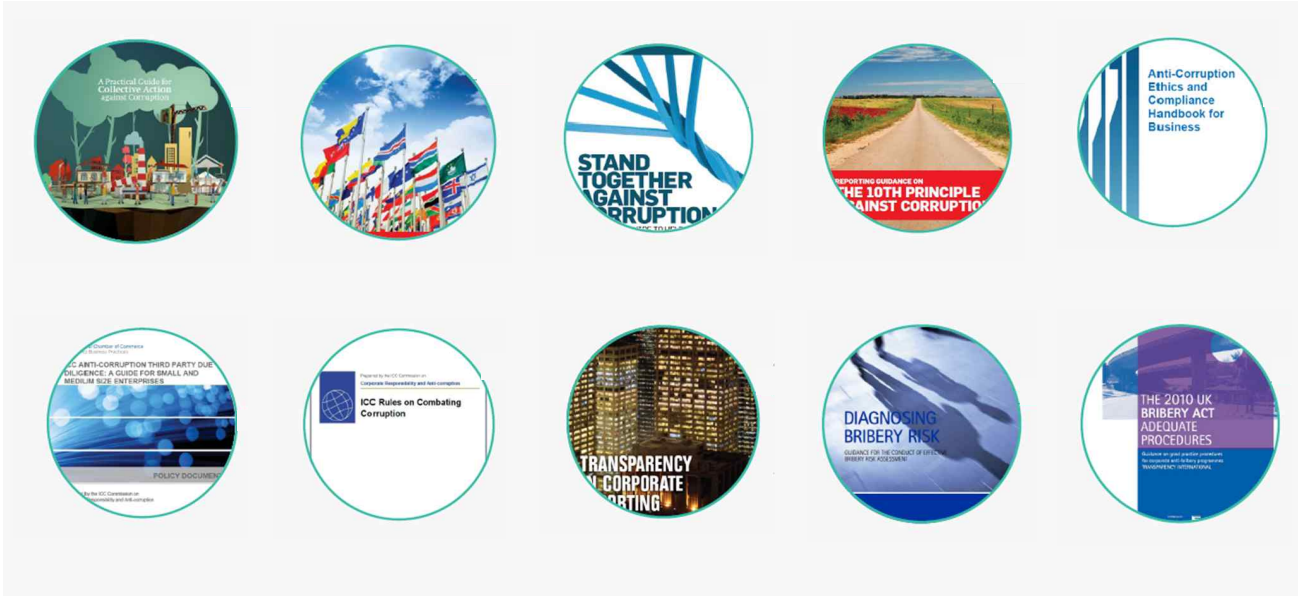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16.7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하도록 보장한다.

글로벌 반부패 법 및 협약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Guideline for SMEs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왜 중소기업에 있어 뇌물과 부패가 우려의 원인이 되는가?

- 중소기업의 구조
- 단기적인 비전 및 관점
- 한정된 자본
- 미미한 영향력
- 자본 구조

“부패는 상거래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부패는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합니다. 한번 부패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그 다음 번에도 예상된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비용, 규제 리스크 및 사법조치를 증가시킵니다.”

“뇌물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히 개도국에 있어 큰 우려의 원인이 됩니다.”

“뇌물과 부패로 인해 해외 투자가 무산될 위험이 큼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부패의 영향을 받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결과가 특히 더 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6 Steps)



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1 부패 리스크 식별



● 위험 신호(Red flag)

부패 리스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리스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리스크가 높은 영역과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 내 부패 취약 영역을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이를 방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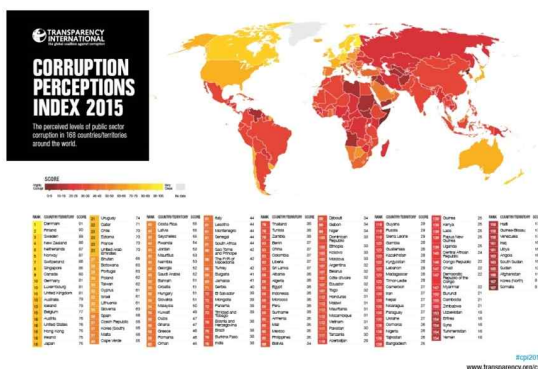
위험 신호의 예

- 고객 또는 대리인이 거액의 수수료나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요구함
- 기업과 고객 사이에 문서화된 합의서나 계약서가 없음
- 계약서가 업계나 정부 표준에 부합하지 않음
- 기술 또는 재무 관련 서류가 없거나 미비함
- 고객이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대금을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함
- 대리인이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음
-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
-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역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함
-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현금으로 대금 지급을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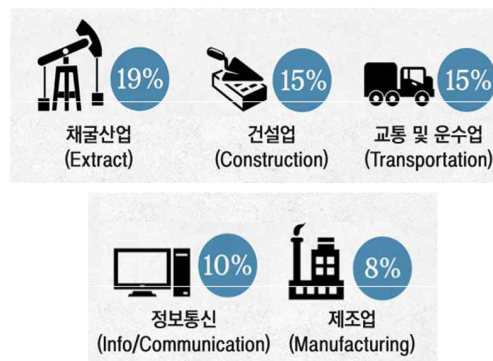
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국가별/산업별 부패 리스크 파악

✓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 부패 취약 산업



1.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2 부패 리스크 평가 및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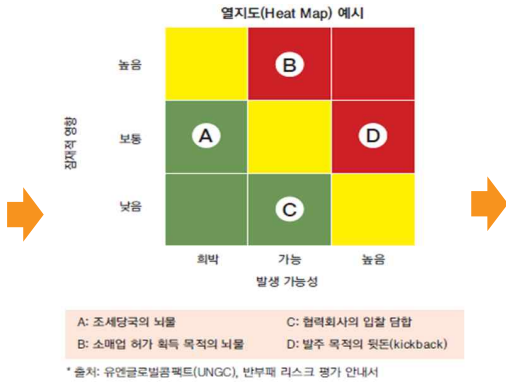
“부패 리스크 평가는 기업이 뇌물수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하며, 그 결과 기업이 세부적인 정책 및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Check list!

부패 리스크 수준(높음/중간/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

- | | | |
|--|--------------------------|--------------------------|
| | Yes | No |
| •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 내에서의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부패에 관한 지역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 조건이 명확하고 적절한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합작 투자자를 비롯해 사업 파트너의 이력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대체로 '그렇다'면, 기업은 부패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느 항목이라도 '아니오'가 나올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외부 인사 고용 시 경영 관리감독 강화 (예: 승인절차를 2명이 확인하는 원칙)
- 관세사의 뇌물 강요를 대비하여 물류사무원 대상 특별 교육
- 중간 관리직 참여 강화(예: 사내 행사에서 발언)
- 장기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납부 자동화
- 주요 공급자 혹은 투자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강화 및 공동 노력 이니셔티브에 참여

2. 특정 부패 이슈

1 급행료

- 통상적인 과정 또는 필수적인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거나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소규모의 뇌물
- 유엔 반부패협약 및 영국 뇌물수수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급행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인 정책 및 교육이 필요함

시나리오: 입국을 위한 급행료 요구

■ 대응 방안

- 출입국 관리자의 뇌물 요구 장소 및 수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대응방안 제시
-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은 24시간 긴급 전화망(Hotline)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뇌물 요구가 보편적으로 발생함을 공항 관리자에게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도 항의

■ 직원 교육

-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함
- 출입국 관리자에게 급행료의 지급 내용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함
- 급행료가 본국법에 어긋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림
- 출입국 관리자가 계속해서 급행료를 요구할 경우, 그 상사에게 확인함
-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상사도 급행료를 요구할 경우, 급행료를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고, 만약 받지 못한다면 지역 대사관에 연락하여 관리자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입국을 기다림
- 만약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이 사실을 당국과 현지 대사관에 보고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받음



2. 특정 부패 이슈

2 특정 유형 지출에 대한 리스크 완화

가. 선물, 접대, 여행경비, 유흥비 지출

- 허용 가능한 선물, 접대 유형, 교통 수단 혹은 유흥 품목
- 지출가능액 제한
- 수혜자의 환급(reimbursement)
- 수혜자의 특징
- 사업상 관계의 특징
- 특정 상황

나. 정치 기부금

- 정치기부금 공여 시기의 적절성 (예: 주요 정치 의사결정 기간 회피)
- 정치기부금의 상한선 설정
- 정확한 회계 장부 및 기록 관리
- 이해관계의 충돌을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와 정당, 당원, 후보, 정치에 개입된 사람과의 관계 조사
- 승인 절차 수립 (예: 기부금 승인을 2명이 확인하는 원칙)
- 정치기부금의 정기 검토 실행
- 정치기부금을 공개 조사

다. 자선 기부금

- 자선기부금 및 후원과 관련된 수혜자의 조항에 대한 이해
- 자선기부금 및 후원금 공여 시기의 적절성(예: 주요 정치 의사결정 기간 제외)
- 자선기부금 및 후원의 목표와 전략 설정(예: 어떤 유형의 활동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
- 이해관계의 충돌을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와 정당, 당원, 후보, 정치에 개입된 사람과의 관계 조사
- 승인 절차 수립 (예: 후원 승인을 2명이 확인하는 원칙)
- 정확한 회계 장부 및 기록 관리
- 자선기부금 및 후원의 공개 조사

2. 특정 부패 이슈

3 이해 상충

- 선물, 수당 및 접대**
 임직원이 선물, 수당, 접대를 받았을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대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
- 중복 고용**
 회사의 대표가 하나 이상의 기관에 속해있을 경우 각 기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예: 한 건설 업체의 고위 경영진이 대형 하드웨어 업체의 사외이사일 경우, 엄격한 경쟁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주요 납품 업체로 선정함)
- 사내 업무 중첩**
 임직원이 사내에서 서로 상충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을 경우 (예: 한 직원이 경영 업무와 감시 업무를 동시에 맡게 되었다면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됨)
- 금융투자**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과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 (예: 조달업체 임찰 시, 담당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를 더 적합한 공급업체보다 선호함)
- 친인척 고용**
 임직원이 보다 능력 있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을 선호할 경우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예: 구매 담당자가 물품의 가격이 더 높고 품질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일원에게 물품 공급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 공무원의 참여**
 전·현직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그들의 참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함 (예: 공무원을 고용함으로써 내부 정보 이용, 과도한 혜택에 대한 의혹을 받거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음)



3. 행동강령 제정

✓ 행동강령의 내용

- 실천 의지를 표명한 CEO의 메시지
-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
 - 회사의 가치, 비전, 임무 및 전략적 방향 제시
- 세부 영역
 - 개인 행동: 직원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설명
 - 부정 또는 부패행위 정의
 - 회사 자원의 이용
 - 이해 상충, 선물 및 혜택
 -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원칙

- 1) 공평하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경영한다 (예: 투명한 납입 기한 및 기록)
- 2) 사업적 이득을 위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 중개인의 뇌물 수수 금지)
- 3) 영향력 행사를 위해 직접 혹은 대리로 뇌물을 수락하지 않는다 (예: 엄격한 중개료 및 수수료 관리)
- 4) 기업의 가치 또는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자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예: 엄격한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 5) 직·간접적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관을 준수하고 유지한다 (예: 선물 및 접대 대응 절차)
- 6) 명확하고 업데이트 된 기록을 유지한다 (예: 기부 의사결정 과정 기록, 뇌물 요구 또는 이해 상충 시 대응에 대한 기록 유지)
- 7) 모든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원칙을 인지하도록 공표한다 (예: 명확한 의사소통 및 교육 실시)
- 8) 정기적으로 반부패 프로그램 및 절차를 점검하고 업데이트 한다 (예: 경험 및 네트워킹 활용)
- 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킨다 (예: 급행료 지불 금지)

* 출처: 국제투명성기구(ТИ),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4. 반부패 이행 - 예방



예방 (Prevent)

-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Tone from the top)
 -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
 - 반부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 예방 시스템 마련
 - 준법 감시인 지명
 - 명확한 지침 수립
 - 직원 및 사업 파트너 파악

명확한 지침 수립

- 다른 회사의 구매 및 영업 관리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는 업무
- 조달, 인허가 및 승인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접촉하는 업무
-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업무



- 전자 결제 방식이 아닌 대금 지급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 모든 현금 인출 내역을 기록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현금 지급 및 수령은 소액 거래에 한정해야 함
- 현금 구매 가능 품목 및 한도를 설정해야 함
-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현금 선지금을 제한함
- 특정 금액 이상의 대금 지급은 2인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함
- 구매 전 두 곳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함

4. 반부패 이행 - 발견



발견 (Detect)

- 내부 통제 시스템
- 정확한 장부와 기록
- 위반 탐지 및 보고

내·외부 위반 탐지 경로

내부 경로	외부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조사 • 내부 감사 • 지칭과 보고에 관한 내부 직통 전화 • 옴부즈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감사 • 제3자의 불만 및 우려 접수 • 언론보도 • 옴부즈맨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위한 절차 수립

- 모든 거래, 자산, 채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업 장부에 기입하고 원문에 따라 세부 사항 기입
- 모든 거래를 공식 회계장부에 기입 및 부외계좌 금지
- 거래, 자산, 채무를 발생 순서에 따라 적시에 기입
-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기, 부적절한 혹은 동의없는 변경이 없도록 장부와 기록을 보존
- 장부와 기록을 법정 기한보다 일찍 파기하지 않음
- 모든 거래를 발생 시점부터 종결까지 지속적으로 기입
- 거래의 합법성 및 진실성
- 전자정보를 파기 및 가공 하지 않고, 즉시 생성 혹은 재생성 될 수 있는 조직화된 형태로 보존/유지/처리

4. 반부패 이행 - 대응



대응 (Respond)

- 부패행위의 징계
- 제재 조치/ 위반 사항 고지
- 개선책 마련
- 준법·윤리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 소통과 교육
-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

제재 조치

실효성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 반부패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며, 기업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함

신뢰성

• 제재 조치는 위반이 현실적으로 억제 가능하다고 인식될 때만 효과 있음
• 제재 조치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보장해야 함

인센티브

• 보상과 처벌을 함께 적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 모범 행동을 '당근'으로 보상하고, '채찍'으로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임

적절성

지나치게 미미하거나, 과도한 제재는 임직원이 규정 외 관행을 보고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으며, 기업은 위반 사항의 심각성과 적절한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열거한 목록을 마련해야 함.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로부터 제재 목록에 대한 의견도 요청 가능함

일관성

• 제재 조치는 관련법과 일관되어야 함
• 제재의 목적은 잠재적인 반부패 프로그램 위반의 억제에 있음
• 제재 조치는 실정법과 모범 사례 기준을 준수하고, 특징과 범위를 한정 지어야 함



4. 반부패 이행 - 대응

인센티브 제공



금전적 보상

- 임직원: 급여 인상, 추가수당, 승진, 선물
- 사업 파트너: 사업 기회 우선권 및 영업 우대 조건



비금전적 보상

-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 사보에
관련 활동 소개, 임원 교육과정 참가, 고위 경영진
혹은 동료로부터의 인정

✓ 인센티브 평가 기준의 예

- 컴플라이언스 교육 참여 및 성과
-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지원 정도
- 컴플라이언스 관련 승인
- 기업 가치와 규범에 관한 지식(예: 윤리강령)
- 문제행위나 제안에 대한 의문제기 혹은 거절

4. 반부패 이행 - 대응

소통과 교육



대상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



내용

시행이유, 목적, 절차에 관한 정보 및 실천 사례

- 표준화된 소통과 교육을 통한 기업 전체의 부패 무관용 원칙을 강조함
- 정책 및 절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설명함
- 기업 규범 및 가치의 실천 사례를 실질적으로 제시(예: 부패 위험에 잘 대처한 직원에게 특별 포상)



방법

웹사이트, 이메일, 뉴스레터, 온라인 교육과정

- 독학에 유용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소통과 교육을 제공함
- 대중매체는 저렴할 뿐 아니라 배포 및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음
- 대상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매체를 통해 표준화된 소통과 교육을 제공



4. 반부패 이행 - 대응

공동 노력 (Collective Action)

-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시민사회)들이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는 과정
- 중소기업은 공동 노력을 통해 영향력 강화 가능
- 반부패 정책 또는 현지법의 집행이 약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함



반부패 국제법 및 협약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환경 조성



기업 내 부패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 시행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감시 및 모니터링

공동 노력을 통한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Fair Player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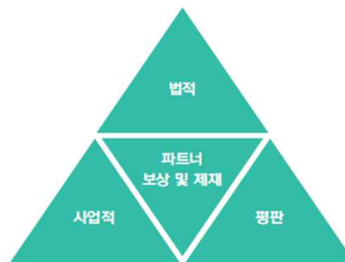
- 세계은행(World Bank)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가 지원하는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
-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프로그램

- 1차년도 산업 (2015)
- 2차년도 지역 (2016)
- 3차년도 국가 (2017)

- 기계산업,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철도, 해외건설 등의 산업협회와 민간협력 증진을 통해 기업 회원사들의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인식 제고
- 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간협력 증진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역량 강화
- 유럽 및 아시아 7개국 대사관과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민간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 간 공동 노력을 증진함으로써 한국 기업환경에서의 반부패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을 높이고 해외 진출국에서 한국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경쟁력 강화

5. 제3자 실사

1 제3자



	제재 조치	인센티브
사업적 측면	- 거래 중단 - 사업기회 배제 - 불리한 계약 조건	- 사업 기회 증가 - 우호적 계약 조건
법적 측면	- 벌금 - 피해보상 - 형사처벌	- 제재 완화 가능
평판 측면	- 부패관련 사건 공표로 인한 평판 하락 (* 주로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공개됨)	- 반부패 우수 이행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

5. 제3자 실사

2 실사 (Due diligence)

- 사업 파트너의 선정과 유지에 있어 실사를 통해 사업 파트너와 연계된 법적 책임, 경제적 불이익, 평판 하락과 같은 위험을 알려주는 조기 경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한 실사는 기업 전체 리스크 평가에 따라 범위와 강도를 조정함 (ex. 고위험 산업 혹은 국가의 공급업체는 보다 엄격한 실사 실시)
- 실사 과정에서 사업파트너의 역량을 확인하고, 반부패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의 사전 확인 및 대처가 가능함

※ 실사 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여섯 가지

1.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 계약을 맺을 제3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
2. 재무 상태와 계약 대금 지급:
 - 지급 대상이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가?
 - 지급 빈도 및 금액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있는가?
3. 제3자의 역량
 -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가?
 - 공무원의 추천을 받았는가?
 - 빠른 지급이나 예외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 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업상의 근거가 충분한가?
4. 공식 기록: 과거의 부패 이력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 (인터넷 검색으로도 가능)
5. 평판: 사업과 관련해 주변 관계자의 의견 참고
 - 제3자를 안 지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제3자와 관련해서 부패의 우려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제3자나 그 직원의 범죄 행위 혐의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는가?
 - 제3자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과 인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가?
6. 윤리 경영과 준법 감시에 대한 접근 방식

* 출처: 국제상공회의소(ICC), 제3자 반부패 실사: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

6. 모니터링

평가 기준

효과성

반부패 정책 및 절차가 금행료 위험 최소화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나타냄

효율성

법적 책임, 경제적 불이익, 평판 하락과 같은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반부패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 준수의 혜택을 그대로 보장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했는지 나타냄

지속가능성

반부패 정책 및 절차와 결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정도 부패위험을 최소화 했는지 나타냄

평가기준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도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